

자유전공학부 학과(전공) 배정 지침

제정 2020. 10. 15

제3차 개정 2024. 05.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시행세칙 제2조의 2(제1전공 배정)에 의거 상지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의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 가능 학과)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다음 각호를 제외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1. 유아교육학과(개정 2023.11.24.)
2. 한의과대학
3.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작업치료학과(개정 2023.11.24.)
4. 미래라이프대학(개정 2023.11.24.)

제3조(신청 자격)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 중 학과 선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입학 후 2개 학기 이수(개정 2023.11.24.)
2. (개정 2020.12.30.)(개정 2023.11.24.)(삭제 2024.05.17.)

제4조(신청 시기)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말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 방법) ① 학과 선택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 ② 매 학년도 학과별 선택 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 ③ 제3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학과 선택을 할 수 없고, 다음 연도의 학과 선택 시기에 학과 선택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과 선택은 제1지망에서 제3지망까지로 한다.

제6조(배정 방법) ① 학과 배정은 제1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② 제1지망 선택학과의 선택신청인원이 선택가능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성적 백분율 순에 의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순으로 한다. 다만, 성적과 취득학점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지망 학과에 모두 배정한다.
- ③ 제1지망 선택학과 배정에서 선택가능인원을 초과한 학생은 제2지망 선택학과부터 순차적으로 선택가능인원에 여석이 있는 학과에 배정하되 배정방식은 동조 ②와 동일하다.
- ④ 학기인정자가 휴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과 배정신청서를 제출 후 휴학하여야 하며, 학과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학과 배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 변경) ①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이 학과를 선택하여 배정된 후에는 선택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 ② 소속이 변경된 학생들은 해당 학과에서 정한 계열기초,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등 졸업 조건을 만족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유전공학부에서 이수한 계열기초, 전공선택

은 일반선택으로 이수구분이 변경된다.(개정 2023.11.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2020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2호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학사지원팀-4209, 2023.11.24.)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사지원팀-2039, 2024.05.17.)

이 지침은 2024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